

사이타마시 정액 감세 보충 급부금(부족액 급부)의 안내

2024 년분의 소득세액이나 정액 감세의 실적액이 확정된 후에, 실제 정액 감세할 수 없는 금액과 2024 년도에 실시한 '정액 감세 보충 급부금'에서 차액(부족)이 발생한 사람에게, 부족액의 급부를 합니다.

지급 대상	절차 방법	신청 기한
2025 년도 개인 주민세의 과세자치단체가 사이타마 시이며, 다음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사람 ① 2024 년분 소득세나 정액 감세의 실적액이 확정되었을 때, 2024 년도에 실시한 '정액 감세 보충 급부금'에 부족액이 발생한 사람 ②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• 2024 년분 소득세 및 2024 년도 개인 주민세 소득할 모두 정액 감세 전 세액이 0 엔 • 과세 제도상 '부양친족' 에서 벗어남 (청색 사업 전임자・흰색 사업 전임자나 합계 소득 48 만 엔 이상인 사람) • 저소득자 대상 급부(※1) 대상 세대의 세대주・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 (※1)저소득 가구 대상 급부란 2023 년도 비과세 가구에 대한 급부(7 만 엔), 2023 년도 균등할만 과세된 가구에 대한 급부(10 만 엔), 2024 년도 새로 비과세 혹은 균등할만 과세된 가구에 대한 급부(10 만 엔)를 말합니다.	대상자에게는 공지를 보냅니다. 개인 사정에 따라 공지 사항이 발송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, 콜센터로 연락주십시오. 또한 각 구청에 신청 서포트 창구가 있으므로, 신청 시에는 이용해 주십시오.	2025 년 10 월 15 일(수) 소인 유효

■ 지급액

•지급 대상①에 해당하는 사람

정액 감세할 수 없는 금액(※2)-2024 년도 실시의 '정액 감세 보충 급부금'

(※2) 정액 감세할 수 없는 금액...(1)+(2)의 합산액(1 만 엔 단위로 절상해 산출)

(1) 2024 년분 소득세의 정액 감세할 수 없는 금액

=소득세분 정액 감세 가능 금액 (3 만 엔×(본인+부양 친족 등)) - 2024 년분 소득세분 정액 감세된 금액

(2) 2024 년도 주민세의 정액 감세할 수 없는 금액

=주민세분 정액 감세 가능 금액 (1 만 엔×(본인+부양 친족 등)) - 2024 년도 개인 주민세 소득 할정액 감세된 금액

•지급대상 ②에 해당하는 자

1 인당 4 만 엔 한도

※2024 년 1 월 1 일 시점에 국외 거주자였던 자는 3 만 엔

문의

【정액 감세 보충 급부금(부족액 급부) 콜센터】※ 영어, 중국어, 조선어(한국어) 등 대응

접수 시간 9 : 00 ~ 17 : 00 (토・일요일, 공휴일 포함)

전 화 0120-568-232 FAX 0120-994-954

【정액 감세 보충 급부금(부족액 급부) 신청 서포트 창구(각 구청 내)】

개설 기간 8 월 1 일(금)~10 월 15 일(수)

접수 시간 9 : 00 ~ 17 : 00 (토・일요일, 공휴일 제외)